

<p>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상업지역→일반주거지역 (4,08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삼성동 74 일대 경기고등학교 동측도로변 4,080㎡의 현재의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은,</p> <p>○이 지역은 경기고등학교 부지이며 도로에 따라 길게 옹벽이 설치되어 상업지역으로 는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변결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1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강남구 개포동 614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용도지역변경: 준주거지역→일반주거지역 (6,90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개포동 614 일대 6,900㎡의 현재의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,</p> <p>○이 지역이 이미 건축된 개포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부지로서,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이 토지를 현실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타당한 변결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2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	의안 번호	71	의안 번호	72	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강남구 일원동 626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용도지역변경: 준주거지역→일반주거지역 (6,10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일원동 626 일대 6,100㎡는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, 이미 건축되어진 삼성사원아파트 부지로서, 이미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현황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</p> <p>○지역현실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류 (17건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오류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오류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구로구 오류동 14-50번지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면 적: 12,888㎡(사유지 10,762㎡, 국·공유지 2,126㎡)</p> <p>• 건축물: 78동(유허가 66동, 무허가 12동)</p> <p>• 가구수: 226세대(가옥주 76, 세입자 150)</p> <p>• 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 지구</p> <p>• 주민동의율: 토지 77%, 건물 82%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	의안 번호	18
의안 번호	71						
의안 번호	72						
의안 번호	18						